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Manual for Ethical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류동춘 · 정원섭 · 이승희 · 김영훈 · 김영심

한국인문학총연합회
The Humanities Association of Korea

 한국연구재단

목 차

1.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의 특징	1
1.1. 목적	1
1.2. 매뉴얼 작성 과정	3
1.3. 연구자 설문조사	4
1.4. 연구윤리 진작을 위한 제안	14
2. 연구 단계별 유의 사항	17
2.1. 연구 설계 단계	17
2.2. 연구 수행 단계	17
2.3. 연구 성과 발표 단계	18
3. 연구부정행위 정의	20
3.1. 위조	20
3.2. 변조	22
3.3. 표절	24
3.4. 부당한 중복게재	33
3.5. 중복투고	42
3.6. 부당한 저자 표시	44
3.7. 그 밖의 연구부정행위	46

4. 출판 윤리	47
4.1. 저자를 위한 논문 작성과 투고 지침	47
4.2. 편집인과 논문 심사자를 위한 지침	49
 5.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및 절차	 56
5.1.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56
5.2.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68
 참고문헌	 89

<설문1-1>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실태 인식
<설문1-2> 전공별 연구윤리 실태 인식
<설문2-1>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관한 인식
<설문2-2> 전공별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관한 인식
<설문3-1> 연구윤리 문제의 등장 문제에 관한 인식
<설문3-2> 전공별 연구윤리 문제의 등장 문제에 관한 인식
<설문4> 연구윤리 매뉴얼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설문5-1> 연구윤리 검증시효의 필요성 인식
<설문5-2> 연구윤리 검증시효 기간에 관한 인식
<설문6> 자기표절에 관한 인식
<설문7-1> 중복투고에 관한 인식
<설문7-2> 전공별 중복투고에 관한 인식
<설문8-1> 연구윤리 검증시효에 관한 인식
<설문8-2> 전공별 연구윤리 검증시효에 관한 인식

<표1> 대학규정 중 중복게재 유형별 포함 여부
<표2> 대학규정 중 중복게재 유형별 해당 항목
<표3> 학회규정 중 중복게재 유형별 포함 여부
<표4> 학회규정 중 중복게재 유형별 해당 항목
<표5> 부당한 저자 표시의 유형
<표6> 연구윤리 적용 규정
<표7> 예비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
<표8> 본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

<그림1> 전체 검증 절차
<그림2> 예비조사 절차도
<그림3> 본조사 과정도
<그림4> 본조사 세부 절차도

1.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의 특징

1.1. 목적

모든 학문은 진리 탐구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모든 연구는 진실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인문사회분야 연구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학문마다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문헌 연구에서부터 고증, 심층 면접, 관찰과 실험, 통계 등 분과학문마다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한 연구 성과의 발표 역시 학술논문, 학술저서, 교양도서, 정책 보고서, 시나 희곡과 같은 문학 작품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어떤 획일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탐구라는 학문 본연의 목적을 확인하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표로 한다.

최근 연구 업적에 대한 획일적이면서도 정량적인 평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 역시 연구 과정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 표절이나 중복게재 저자의 표시 등 여러 가지 연구윤리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매뉴얼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이 연구를 설계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바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문화를 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오늘날 한국 인문 사회 분야 역시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표준화와 관료화 그리고 양적 평가라는 삼각 횡풍을 마주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인문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특성이 종래의 교육 기관에서 연구 기관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유는 대학의 관료화이다. 관료화된 대학 행정 체계에서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질적 우수성보다는 양적 계량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논문의 편수 등 객관적인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마주하면서 인문사회분야 역시 기계적 방식으로 연구 업적을 평가받고 있다.

셋째 이유는 이러한 획일화 과정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 평가의 표준처럼 간주되면서 인문학의 다양한 글쓰기 양식들이 고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 학술 논문이라는 형태로 글쓰기 방식이 획일화되면서 이와는 다른 방식의 인문학적인 여러 탐구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 인문학에 대한 최근의 과도한 사회적 관심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좋은 성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 속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면서 순수 연구가 상대적으로 외면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문사회분야 역시 대규모 연구단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단 내의 협력이나 갈등 등 기존의 개인 중심의 연구 환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던 윤리적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윤리 매뉴얼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학문의 근본정신, 즉 인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연구윤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상하여 그에 따라 세밀한 규정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건 실천적으로건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규정집을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규정집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우선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그 자체가 평가와 인정을 위한 소외된 노동의 과정이 아니라 인문 정신의 구체화 과정이 되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문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그 정성적 특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구윤리에 대한 논쟁은 훨씬 더 격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논란을 거치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확장되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 매뉴얼이 목표로 하는 바는 훈령이나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연구의 자유’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문 외적인 이유에서 부당하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연구자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로 한다. 가령 ‘자기표절’처럼 용어 자체가 모순적임에도 그 선정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학문 외적인 공격에 대해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학술지에 실는 행위나 제한적인 중복게재를 권장함으로써 소중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안내서는 인문 사회 분야 연구자들을 외부의 부당한 비난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매뉴얼 작성 과정

이 매뉴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문사회분야와 연관된 국내외의 각급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관련학회의 기존 연구윤리를 참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자문을 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2.2 참고)

① 기초자료 확보

② 선행연구자료 활용

③ 전문가 자문

④ 인문학 주요 학회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⑤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1.3. 연구자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4.3.12. ~ 2014.3.20.'의 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인문사회 연구자 이메일 주소록을 활용하여 서베이몽키 방식으로 13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현재 인문사회분야에서 연구윤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Rating Average	Response Count
23	432	732	187	16	3.19	1390
1.65%	31.08%	52.66%	13.45%	1.15%		100.00%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Rating Average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를 순서대로 각각 5, 4, 3, 2, 1 점을 주어 계산한 평균값이다.

** Response Count는 이 질문에 대한 전체 응답자 수를 가리킨다.

<설문1-1>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실태 인식

<설문1-1>에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 약 85%가 연구윤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인문 사회 분야에서 전반적으로는 연구윤리가 적절히 준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공별 연구윤리 실태 조사 결과인 <설문1-2>를 살펴볼 때, 연구윤리 준수 상황에 인식은 역사 분야가 가장 긍정적이고, 예술, 기타 분야가 부정적이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정도이다.

전공별 차이 (전체 : 3.19)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어학	사회과학	법학	예술	기타
3.16	3.34	3.17	3.24	3.22	3.23	3.11	2.93

<설문1-2> 전공별 연구윤리 실태 인식

현재 연구윤리가 준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에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래 예를 참고하여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일곱 개 항목 모두 순위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Answer Options	1	2	3	4	5	6	7	Response Count
표절	549 39.50%	203 14.60%	181 13.02%	161 11.58%	145 10.43%	107 7.70%	44 3.17%	1390 100.00%

위조/변조	111 7.99%	280 20.14%	188 13.53%	228 16.40%	268 19.28%	265 19.06%	50 3.60%	1390 100.00%
이중게재	72 5.18%	217 15.61%	343 24.68%	332 23.88%	247 17.77%	156 11.22%	23 1.65%	1390 100.00%
저자표기	155 11.15%	179 12.88%	236 16.98%	256 18.42%	280 20.14%	237 17.05%	47 3.38%	1390 100.00%
자기표절	205 14.75%	253 18.20%	197 14.17%	175 12.59%	221 15.90%	255 18.35%	84 6.04%	1390 100.00%
여러 편의 논문으로 쪼개기	198 14.24%	229 16.47%	210 15.11%	210 15.11%	206 14.82%	297 21.37%	40 2.88%	1390 100.00%
기타	100 7.19%	29 2.09%	35 2.52%	28 2.01%	23 1.65%	73 5.25%	1102 79.28%	1390 100.00%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위의 설문에서 가로 방향의 1~7의 숫자는 세로 방향의 각각의 연구윤리를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를 가리킨다.

<설문2-1>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관한 인식

‘표절’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수는 549명이고,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수는 203명이다. ‘위조/변조’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수는 111명이고,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수는 280명이다. 따라서 여러 연구윤리 가운데 1위로 뽑은 숫자만 비교해 볼 때, 응답자들은 표절, 자기표절, 여러 편의 논문으로 쪼개기, 저자표기, 위조/변조, 기타, 이중게재의 순서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공별로 보자면, 철학/종교 분야의 연구자들이 표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았고 예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그렇게 생각하였다. 각각의 사안

에 대하여 전공별로 심각하게 느끼는 순위의 차이는 <설문2-2>와 같다.

구분	표절	위조 /변조	이중 게재	저자 표기	자기 표절	포개기	기타
전체	2.75	3.90	3.74	3.88	3.76	3.75	6.22
문학	2.82	3.60	3.59	4.24	3.84	3.52	6.38
역사	2.59	4.20	3.67	4.23	3.81	3.61	5.89
철학 /종교	2.44	3.71	3.70	4.32	3.83	3.83	6.16
어학	2.85	4.03	3.79	4.14	3.38	3.52	6.30
사회 과학	2.74	3.95	3.79	3.60	3.73	3.91	6.27
법학	2.51	3.99	3.36	4.01	4.33	3.55	6.26
예술	3.13	4.13	3.92	3.73	3.42	3.56	6.11
기타	2.72	3.78	3.82	3.88	4.03	3.9	5.87

* 응답자가 1~7로 매긴 순위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일곱 가지 윤리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값이 낮은 것이 가장 높은 순위 선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2-2> 전공별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관한 인식

<설문3-1>은 연구윤리 문제의 등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인문사회분야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래 예를 참고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다섯
개 항목 모두 순위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Answer Options	1	2	3	4	5	Response Count
연구윤리의식 부족(부재)	565 40.65%	426 30.65%	204 14.68%	154 11.08%	41 2.95%	1390 100.00%
연구윤리규정 미비(부재)	104 7.48%	291 20.94%	500 35.97%	446 32.09%	49 3.53%	1390 100.00%
연구윤리교육 미비(부재)	106 7.63%	309 22.23%	487 35.04%	442 31.80%	46 3.31%	1390 100.00%
업적평가방식	529 38.06%	327 23.53%	177 12.73%	322 23.17%	35 2.52%	1390 100.00%
기타	86 6.19%	37 2.66%	22 1.58%	26 1.87%	1219 87.70%	1390 100.00%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가로 방향의 숫자는 세로 방향에 제시한 연구 윤리 문제 등장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 순위를 가리킨다.

〈설문3-1〉 연구윤리 문제의 등장 문제에 관한 인식

‘연구 윤리 의식 부족’을 1순위로 뽑은 응답자가 565명이고, 2순위로 뽑은 응답자가 426명, 3순위로 뽑은 응답자가 204명이다. ‘연구 윤리 규정 미비’를 1순위로 뽑은 응답자는 104명, 2순위로 뽑은 응답자는 291명, 3순위로 뽑은 응답자는 500명이다. 1순위 응답자의 숫자로 보면, 연구 윤리 문제의 등장 이유를 1390명의 응답자 가운데 40.65%인 565명이 ‘연구 윤리 규정 미비’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고, 38.06%인 529명이 ‘업적 평가 방식’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인문사회분야 역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업적 평가 방식에 대한 응답 역시 40%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인문사회분야 연구 업적 평가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구분	연구 윤리 의식 부족	연구 윤리 규정 미비	연구 윤리 교육 미비	업적 평가 방식	기타
전체	2.05	3.03	3.01	2.29	4.62
문학	2.01	3.12	3.28	1.96	4.64
역사	1.99	3.31	3.29	1.94	4.47
철학 /종교	2.13	3.07	3.03	2.13	4.63
어학	1.91	2.97	2.95	2.50	4.68
사회 과학	2.08	2.97	2.94	2.35	4.66
법학	2.04	3.25	3.00	2.26	4.45
예술	2.19	2.89	3.04	2.31	4.57
기타	1.96	3.06	2.72	2.72	4.54

* 응답자가 1~5로 매긴 순위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설문3-2〉 전공별 연구윤리 문제의 등장 문제에 관한 인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공 영역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것이 조금씩 다르다. 응답자 전체의 응답을 종합하면 '연구윤리의식부족(부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는데, 문학 분야와 역사 분야에서는 ‘업적평가방식’을 더 중요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철학/종교는 두 가지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동등하게 보고 있다. 순위값을 평균한 값은 소수점까지 완전히 일치하지만 ‘의식 부족(부재)’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45명, ‘업적평가방식’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48명이므로 미세하게나마 ‘업적평가방식’을 더 중요한 문제로 본다고 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 부족(부재)’냐 ‘업적평가방식’이냐로 견해가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 전자에는 문학, 역사, (철학/종교) 분야가, 후자에는 어학, 사회과학, 법학, 예술 등 분야가 해당된다. 철학/종교 분야는 극히 미세한 차이에 의해 전자로 기운 것이므로 둘 다 중시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설문4>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를 위한 공통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약 80% 가까이 필요성에 공감을 하였다. 그러나 분과 학술단체의 규정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 역시 적지 아니하였다.

인문사회분야 전반에 ‘공통된’ 연구윤리 안내 지침(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Rating Average	Response Count
342	699	214	115	20	3.88	1390
24.60%	50.29%	15.40%	8.27%	1.44%		100.00%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Rating Average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를 순서대로 각각 5, 4, 3, 2, 1 점을 주어 계산한 평균값이다.
 ** Response Count는 이 질문에 대한 전체 응답자 수를 가리킨다.

〈설문4〉 연구윤리 매뉴얼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설문5-1〉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53%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설문5-2〉처럼, 시효를 설정할 경우 5년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에 대해 47%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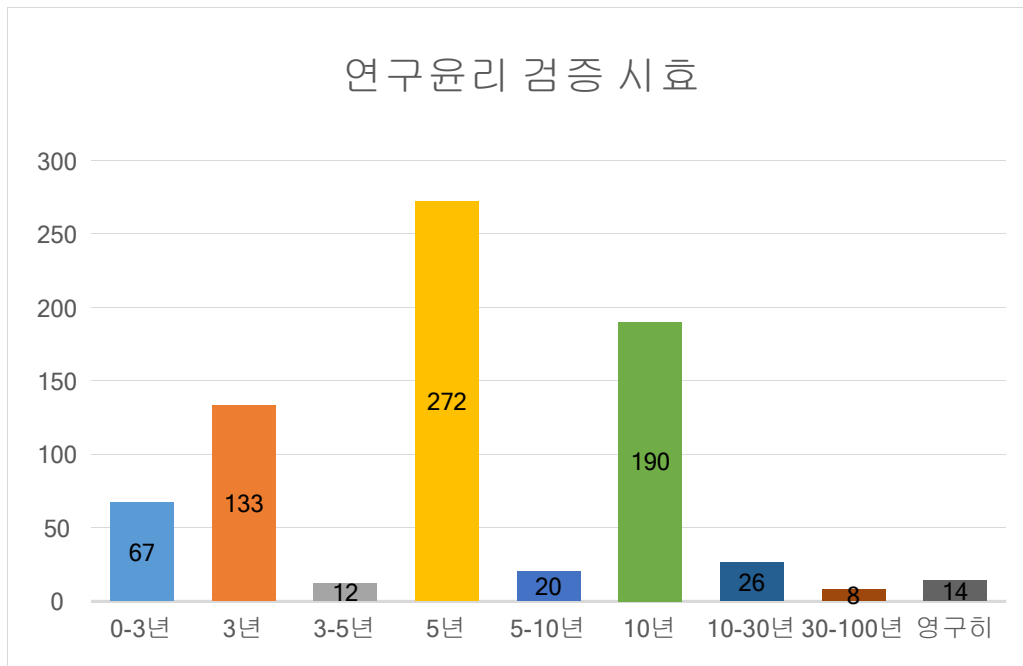
연구윤리 검증시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시효가 필요하다	52.7%	733
시효가 필요하지 않다	47.3%	657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설문5-1〉 연구윤리 검증시효의 필요성 인식

연구윤리 검증시효가 필요하다면 몇 년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0-3년	3년	3-5년	5년	5-10년	10년	10-30년	30-100년	영구히	계
67	133	12	272	20	190	26	8	14	742
9.03%	17.92%	1.62%	36.66%	2.70%	25.61%	3.50%	1.08%	1.89%	

〈설문5-2〉 연구윤리 검증시효 기간에 관한 인식



한편, <설문6>은 ‘자기 표절’에 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자기표절’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개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50% 정도였다.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표절’이라는 표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자기표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50.4%	700
‘자기표절’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에서 특히 중요하다.	31.7%	441
잘 모르겠다.	17.9%	249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Response Percent는 이 질문의 응답자 가운데 세로의 항목을 선택한 비율을 가리킨다. 즉 응답한 1390명 가운데 50.4%인 700명이 ‘자기표절’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 Response Count는 이 질문의 응답자 가운데 세로의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의 숫자를 가리킨다.

〈설문6〉 자기표절에 관한 인식

그러나 설문조사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도 표시하였다.

가. 학술 논문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그 이외에도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의 관계처럼 학계의 암묵적 역학 관계 때문에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부당한 저자 표시가 등장하는 등 연구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면서 연구 환경의 왜곡현상이 보인다.

1.4. 연구윤리 진작을 위한 제안

(1) 연구윤리 일반 원칙

인문사회분야 역시 연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

1. **정직성(honesty):** 연구의 기획 및 수행과정에서 방법 및 절차, 연구 성과의 출판, 참여자의 적정 기여도 표시를 정직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객관성(objectivity):** 문헌에 대한 해석, 실험과 관찰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이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의 순수성 및 객관성을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 기관을 밝혀야 한다.
3. **개방성(openness):** 연구 과정에서 얻게 된 데이터와 자료 및 연구 방법 등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수용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confidentiality):** 연구 및 심사 과정에서 기밀사항이나 실험 및 관찰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기밀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주의깊음(carefulness):** 연구 과정에서 생산한 실험 및 관찰 면접 등의 원시 데이터를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동료에 대한 존중(respect for colleagues):** 공동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단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성, 인종, 종교, 연령 등 학문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이나 특혜를 배제하며, 연구 참여자들을 공정하게 대

1) Shamoo, Adil E., and Resnik David B.,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New York, 2009, p.28.

우하여야 한다.

7. **지적재산권 존중(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연구 과정에서 타인의 지적 재산을 적절히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연구자의 미출판 아이디어를 적절한 동의없이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인용을 할 경우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절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준법성(respect for the law):** 연구 과정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대상의 존중(respect for subjects):**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 관찰, 면접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나 동물윤리심의위원회(IACUC)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가운데 적절한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10. **청지기 정신(stewardship):** 연구 환경을 잘 보존하며 선용하여야 한다. 연구 과정에서 활용하는 각종 도구와 장비들을 잘 관리하여 하며 그 결과 얻게 된 샘플이나 데이터 등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11.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12. **학문적 자유(freedom):** 연구자는 연구 주관 기관 및 연구비 수혜 기관으로부터 학문적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하며 또한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실천적 제안

1. 연구의 진실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과 연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부자 고발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2. 표절의 기준은 인문사회분야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작업은 원칙적인 의미에서 시효나 주체를 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은 검증 작업과 달리 행정적 처리를 위한 징계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과 특정 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연구 단계별 유의 사항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은 설계 단계, 수행 단계, 결과 발표라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각각의 연구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으며 위에서 제시한 일반적 원칙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1 연구 설계 단계

-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설정
- 연구방법 및 추진계획 설정
- 공동 연구원 전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
-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

2.2 연구 수행 단계

- 연구목표, 내용, 방법 및 추진계획 공유 확인
- 연구의 지속 여부 결정
- 공동 연구원 전체의 역할 분담 조정
-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경우 자발적 의사에 따라 연구 중단 허용
- 연구윤리 준수 여부 확인: 자료의 수집, 처리, 분석시의 윤리 기준(위조, 변조 등), 자발적 동의'및 '사생활 보호'의 의무, 연구비의 적절한 집행.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해 내부자고발(내부자제보)에 대해 교육

2.3 연구 성과 발표 단계

- 연구 성과에 대한 정확한 보고(성실 실패 포함)
- 연구 성과에 대한 과장된 홍보 금지
-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올바른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 저자의 자격 기준 및 표시 순서
- 올바른 출판 윤리

인문사회분야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 단독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인문사회분야 역시 공동 연구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연구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설계 단계의 경우, 전체 연구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과 추진 계획 등이 합리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역할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이 연구단 내부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이 때 연구 책임자는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둘째 연구 수행 단계의 경우, 애초의 연구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동 연구원 전체가 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음 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요구된다면 연구단 전체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에 대해 연구단의 내부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외부에 알리는 것(내부자고발, 내부자제

보)이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숙지시켜야 한다.

셋째 연구 성과 발표의 단계의 경우, 해당 연구가 처음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직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성실히 연구에 임하였음에도 예상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그 예상하지 못한 요인을 밝힘으로써 후속 연구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성실실패)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성과에 대해 복수의 저자가 발표할 경우, 해당 연구 성과에 대한 저자 표시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공동연구원 전체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 수행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되고 또한 공지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외부의 강제 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에게는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동연구를 이와 같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연구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학문적 권위를 공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면서도 과도한 책임이나 불필요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공동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과정에서 소외됨이 없이 능동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연구를 보장함으로써 전체 연구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설계, 수행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투고 등을 말한다.

일부 연구 기관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를 구분하고 있다.²⁾ 이러한 구분에 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말하며, 반면 연구부적절행위란 중복게재나 부당한 저자 표시처럼 연구결과발표 단계에서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념상 이런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연구의 기획, 수행,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행위를 망라하는 의미에서 ‘연구부정행위’라는 개념을 넓게 사용하고자 한다.

3.1. 위조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 서울대학교의 경우 연구윤리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대진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함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규정]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경제학회 연구윤리규정]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중어중문학회 연구윤리규정]

연구자는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재하지 않는 사물을 임의로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The Korean Economic Review 연구윤리 규정]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유형1) 인문사회분야에서 위조란 실제로 통계 조사 혹은 심층 면접, 실험, 관찰 등을 수행하지 않은 채 수행한 것처럼 데이터나 결과를 제시하는 행위

(유형2)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 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은 논거를 임의로 만들어 내는 행위

(유형3) 문헌 연구의 경우 원하는 결론을 위하여 없는 전거를 만들어 내는 행위

3.2. 변조

“변조”란 연구의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 연구데이터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목포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변조”는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진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는 경우, 설문조사 시조사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실험 또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 등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규정]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중어중문학회 연구윤리규정]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가 부득이하게 특정한 자료를 수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체적 사실을 연구 결과에 명시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 연구윤리규정]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유형1) 인문사회분야에서 변조란 통계 조사 혹은 심층 면접, 실험 등의 수행 과정에서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행위

(유형2) 문헌 연구의 경우 원하는 결론을 위하여 전거의 내용을 임의로 고치는 행위

(유형3) 연구 과정에서 원하는 결론과 위배되는 자료를 고의로 제외시키는 행위

3.3. 표절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혹은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한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 타인의 연구 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서강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지적 자산(연

구성과,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등)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부당하게 이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경인교대 연구윤리규정]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덕성여대 연구윤리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송실대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주대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규칙]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구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 타인의 연구업적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원대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정당한 인용 없이 보고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국학연구원 심사규정 및 윤리규정]

(표절의 의미와 형태) : 본 연구원에서는 표절의 의미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표절의 유형에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학술 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표절

저자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유용할 경우 표절이 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절의 경우를 논문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1) 타인의 저작물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 (2)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져온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가 될 때).
- (3) 표절은 기본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쓰는 직접 표절과 출처를 밝히지만 독창적 내용이 없는 간접 표절로 나눈다. 따라서 ① 타인 저술의 원저작물의 단어나 글 또는 아이디어를 포함한 텍스트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복사하거나 사용하는 텍스트 표절이나, ② 타인 저술의 원저작물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나 문장을 추가 또는 삽입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모자이크 표절, ③ 그리고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자기표절 등은, 한국영어영문학회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표절행위이다.
- (4) 기타의 표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영어영문학회 학술지 『영어영문학』 “제5장 표절과 연구 부정행위” 참조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학술지 『영어영문학』 “제5장 표절과 연구 부정행위”]

5.1. 표절의 개념과 유형

5.1.1. 표절의 개념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유용할 경우 표절이 된다.

- (1) 타인의 저작물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 (2)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져온 원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가 될 때).

5.1.2. 표절의 유형

구체적으로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로 나눈다.

- (1) 텍스트 표절: 타인 저술의 원 저작물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포함

한 텍스트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복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 표절이다.

- (2) 모자이크 표절: 타인의 저작물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나 문장을 추가 또는 삽입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의 표절이다.
- (3) 자기표절: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의 표절이다.
- (4) 중복게재: 『영어영문학』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박사논문의 경우 한 장(章)이나 여러 장을 일부 수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기할 때 출판을 허용한다.

[국어국문학회 연구윤리규정]

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한국중어중문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5조(표절)

- 1.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착상이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연구자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연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함에 있어 반드시 인용 표시 및 주석 등을 통해 이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각 회 또는 공동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만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에 관한 의견에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권위자 5인 이상을 선임하여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중국어현대문학학회 연구 윤리 규정]

(1) 표절

- ① 타인의 연구결과에 제시된 생각이나 표현을 적절한 인용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사용한 경우
- ②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인용한 내용을 재인용하면서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규정]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한국경제학회 연구윤리규정]

(1)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①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도용하는 표절 행위

[한국중국어소설학회 연구윤리 규정]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정확한 출처 명시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The Korean Economic Review』 연구윤리 규정]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1.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도용하는 표절행위

4. 동일한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게재 또는 출판하는 행위

[한국중국어현대문학학회 연구 윤리 규정]

(2) 자기 표절

- ① 자신이 발표한 연구결과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 경우
- ②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다른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적인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한국정치학회 저술 윤리강령]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규정에 대한 분석

1. 표절에 대한 인문사회 분야 학술기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2. 미국의 경우는 2001년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버지니아 대학의

루블룸필드 교수가 ‘동일한 단어가 6개 이상 겹칠 경우’를 표절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³⁾ 한국의 경우는 표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가령 연속하여 6 단어 이상이 일치하는 경우 혹은 한 문장 이상)을 명시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

3. 한국영어영문학회의 경우, 표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텍스트 표절
2. 모자이크 표절
3. 자기 표절

4. 자기 표절이라는 용어는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영어영문학회 외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술 기관 중 확인된 곳은 다음과 같다.

The Korean Economic Review
한국정치학회 저술 윤리강령

5.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학술지 게재 허용 여부는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영어영문학회 : “박사논문의 한 장이나 여러 장을 일부 수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기”할 때 이를 자기표절이 아닌 ‘중복게재’로 간주하고 출판을 허용한다.
- ②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는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다른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적인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자기 표절’로 간주하고 허용하지 않는다.

3) 채석용(2011: 178-179) 참고.

● 제안

1.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술 논문 발행 기관 혹은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판정한다. 이때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상호 일치 여부 및 그 정도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몇 % 이상의 일치도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이를 기계적으로 표절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2. 본 연구에서는 자기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용어를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이것은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 본 연구에서는 박사 학위 논문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에 실는 것에 대해 적극 추천하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 업적과 이를 보완하여 출판한 학술 성과에 대한 연구 업적을 중복 산정할지 여부는 해당 학술 기관에서 결정한다.
4. 표절은 학술 연구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기존에 발표된 연구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 동일한 연구 내용이 발표되었다면 나중에 발표된 연구 성과는 표절로 간주될 수도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고의성 여부를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해당 연구 결과물이 위조, 변조, 표절 등으로 판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요소가 일정 수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3.4.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비의 중복 수혜, 연구 결과의 중복 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 결과 등을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내용 전체 혹은 일부를 이중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하는 행위(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한다)
-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저서·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의 2(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7.17>

1. 연구논문 등 작성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서강대학교 연구윤리규정]

- ①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 ② 연구자는 자신의 자료를 게재·출간시 다음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학계의 의견에 따라 중복게재로 판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개정 2012.9.6>
 5. 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데이터 중 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개정 2012.9.6>
 6.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처음 투

고한 학술지 게재가 거부되거나 논문의 게재가 철회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미 발표된 자신의 저작물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2.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경우
 3.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을 출간한 후 연구 데이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이 추가되어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
 4.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게재한 경우(한 언어로 출간된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5.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시켜 나가는 연구과정에서 나온 후속 저작물의 경우
 6. <삭제 2012.9.6>
 7.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8.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한국영어영문학회 연구윤리 규정]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박사논문의 경우 한 장(章)이나 여러 장을 일부 수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기할 때 출판을 허용한다.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규정]

“표절(타인 및 자기)”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정치학회 저술 윤리강령]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한국정치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한국정치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한국중어중문학회 연구윤리규정]

- 1.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성과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 3. 연구자는 자신의 학위 논문을 단순히 축약 또는 번역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투고,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 4.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중복 게재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논문의 형태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 5. 연구자가 외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6. 연구자가 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외국문으로 번역하여 국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 7. 연구자가 초고 형태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proceedings)이나 전문 학술지가 아닌 잡지 등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출판하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8.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출판함에 있어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 ① 동일한 논문을 서로 다른 간행물에 이중으로 게재하는 경우
- ② 동일한 논문을 일차논문 발표에 대한 서지사항 명시 없이 언어만 바꾸어서 게재하는 경우(예: 중국어→한국어, 한국어→중국어)

● 기존 규정에 대한 분석

1. 중복게재에 관한 정의 역시 각 대학별, 학회별로 다르다. 중복게재 자체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복게재가 연구비의 중복 수혜, 연구결과의 중복 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순수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널리 배포하여 대중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중복 게재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학술 기관의 규정 역시 다양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 [한국중어중문학회]와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의 경우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중어중문학회]에서는 번역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두고,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예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째 외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는 것이고, 둘째 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외국문으로 번역하여 국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중복게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에서는 서지사항을 명시하는 조건 하에 중국어와 한국어 쌍방향의 번역 논문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중어중문학회]과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는 모두 중어중문학과 관련된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기타 어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로 나아가면서 더욱 큰 균열을 빚고 있다.

소중한 연구 성과를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 최초의 출처를 명백히 밝히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출판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중복게재’를 구분하고자 한다.

가. 정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나 기관의 허락을 받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힌 경우

나. 부적절한 중복게재

중복게재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나 연구비의 중복수혜, 연구결과의 중복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실수 등의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나 연구자는 부적절한 중복게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나 기관의 허락을 받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혔으며 더 나아가 중복게재가 교육, 사회봉사, 연구결과의 국제

화, 사회적 확산 등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경우, 장려해야 할 중복게재는 학문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장려해야 할 중복게재의 경우 연구실적 산정에서 중복계산 할 수 없으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 글로 발표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국내외에 발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을 우리 글로 번역하여 국내 학술지에 실는 것 역시 권장한다.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보완하여 전문 학술지에 실거나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논문의 지도 교수 및 심사 교수를 주석에서 밝히는 것을 권고한다.

라. 학술대회 발표집이나 정책연구보고서 등에 발표된 논문은 중복게재와 무관하다. 부분적인 중복게재의 경우 중복게재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중복게재와 관련된 문제는 전체적인 중복게재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을 참고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마. 학술저서의 내용에 본인의 기출간 논문이 포함될 경우, 학회마다 규정은 없지만 소속 기관에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당한 중복게재	부적절한 중복게재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	학술대회발표집, 정책연구보고서 게재
서울대	X	X	△	X
경북대	O	X	X	X
서강대	O	X	△	O

〈표1〉 대학규정 중 중복게재 유형별 포함 여부

(x: 금지, o: 허용, △: 조건부 금지, ▲: 조건부 허용)

서울대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저서·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 금지.
경북대	정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서강대	정당한 중복게재: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기타 학술대회발표집이나 정책연구보고서에 실린 중복게재: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인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표2〉 대학규정 중 중복게재 유형별 해당 항목

	정당한 중복게재	부적절한 중복게재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	학술대회발표집, 정책연구보고서 게재
한국철학회	X	X	X	X
한국정치학회	X	X	X	X
한국영어영문학회	X	X	O	X
한국중어중문학회	O	X	O	O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X	X	△	X

〈표3〉 학회규정 중 중복게재 유형별 포함 여부

(x: 항목 없음, o: 항목 있음, △: 조건부 금지, ▲: 조건부 허용)

한국영어 영문학회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 박사논문의 경우 한 장(章)이나 여러 장을 일부 수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기할 때 출판 을 허용한다.
한국중어 중문학회	정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중복 게재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논문 의 형태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외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 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 을 명시하여야 한다. - 연구자가 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외국문으 로 번역하여 국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 결

	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 이므로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학술대회발표집, 정책연구보고서에 게재: 연구자가 초고 형태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proceedings)이나 전문 학 술지가 아닌 잡지 등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출판하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한국중국 현대문학 학회	“동일한 논문을 일차논문 발표에 대한 서지사항 명시 없 이 언어만 바꾸어서 게재하는 경우(예: 중국어→한국어, 한국어→중국어)” 게재 금지.

〈표4〉 학회규정 중 중복게재 유형별 해당 항목

3.5. 중복투고

“중복투고”란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투고 자체를 연구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허용 여부는 연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중복투고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공지가 없을 경우 중복투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중복투고가 연구윤리에 저촉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Rating Average	Response Count
332 3.88%	699 50.29%	204 14.68%	130 9.35%	25 1.80%	3.85	1390 100.00%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Rating Average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를 순서대로 각각 5, 4, 3, 2, 1 점을 주어 계산한 평균값이다.

** Response Count는 이 질문에 대한 전체 응답자 수를 가리킨다.

〈설문7-1〉 중복투고에 관한 인식

중복투고에 관하여 인문사회분야 전공별로 문학, 역사, 사회과학, 기타 분야는 평균 보다 높은 긍정 경향을 보인 반면, 법학, 철학/종교 등의 분야는 부정적 경향을 보인다.

전공별 차이 (전체 : 3.85)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어학	사회 과학	법학	예술	기타
3.91	3.90	3.63	3.80	3.89	3.52	3.74	4.1

〈설문7-2〉 전공별 중복투고에 관한 인식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긍정 응답 경향을 보인 분야는 문학, 역사, 사회과학, 기타이다.

3.6.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 혹은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학술적 공헌 또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적절한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공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공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한 행위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규정]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중어중문학회 연구윤리규정]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연구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뎃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부당한 저자 표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선물 저자 (gift author)	유령 저자 (ghost author)	교환 저자 (swap author)	도용 저자
‘공짜저자’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는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영역 연구자와 서로 자기 논문에 상대방을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경우

〈표5〉 부당한 저자 표시의 유형⁴⁾

특히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연구 성과물만을 통해서 저자의 인용 표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당한 저자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런 부정행위가 없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7. 그 밖의 연구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혹은 협박하는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위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예시일 뿐이며 각급 대학과 연구 기관 및 학회에서는 해당 학문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그 목록을 스스로 정하기를 권장한다.

4) 김옥주(2010) 참고.

4. 출판 윤리

4.1. 저자를 위한 논문 작성과 투고 지침

(1) 저자의 기본 책무

- 저자는 자신이 쓴 논문의 내용, 수행한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저자는 자신의 연구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또한 저작권 등 관련 법규를 따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저자는 학술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자는 다른 곳에 발표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되, 동시에 여러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을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 저자는 정해진 시간 이전에는 학술지에 투고한 내용을 다른 매체에 알리지 않아야 하며, 소속 기관이나 연구 지원 기관에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 저자는 편집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저자는 논문이 투고된 이후, 혹은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된다면 이를 편집인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

- 저자는 편집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 규정, 방법, 소프트웨어, 연구노트 등을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자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에도 편집인 혹은 독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논문에서 오류나 그 밖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편집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2) 논문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저자는 필요한 경우, 충분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 과정을 밝혀야 한다.
- 저자는 인문사회분야에서도 통계, 실험, 면접 등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충실히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논문의 근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 또는 편집인이 관련 근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의 이해 관계, 연구 수행 과정,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항을 연구자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밝힘으로써 편집인 및 독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연구 성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3) 연구 성과의 정직성

- 저자는 한 편으로 실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다수의 논문으로 분할하

여 출판하여서는 안 된다.

4.2. 편집인과 논문 심사자를 위한 지침

(1) 편집인의 기본 책무

- 편집인은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출판되는 학술지의 수준과 출판 윤리를 담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 투고 규정

(투고자에 대해 연구윤리 준수 여부 자기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방법 및 절차

(4) 편집위원 역할 및 명단 (편집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지 여부)

(5) 심사위원의 책무: 심사의 기밀 준수 의무 및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 보호 의무

(필요한 경우 심사 위원에 대해 위의 두 가지 의무 준수에 대한 준수 서약을 받을 수도 있다.)

(6)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서의 공개 여부 및 시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할 수 있지만, 영구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침은 사전에 밝혀야 한다.)

(7) 심사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 판정 기준

(8)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소원 절차

(9)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절차

- 편집인은 학술지 발간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편집위원의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편집인은 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윤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모든 2차적 요구를 배제하여 편집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학술지 내에서 영업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편집 및 심사 과정과 분리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후원 기관이나 발행 기관이 논문 게재 여부나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독자들이 후원 기관이나 발행 기관의 역할과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편집인이 부당한 편집 행위를 했든지, 편집인의 결정이 학술지의 발행 목적에 반하는 것이 판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학술지 발행 기관에서 학술지 내용을 문제 삼아 편집인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 편집인은 공정한 심사 제도를 확립·운영해야 한다.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인의 책임이다.

-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때부터 학술지가 발행된 이후에 이르기까지 학술적, 혹은 윤리적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술지 발행 이후에도 논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정·설명·철회·사과문을 즉시 게재함으로써 학술지의 출판 윤리를 확보해야 한다.
- 편집인은 연구윤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그 절차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편집이나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심사자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
- 편집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동물 실험을 포함하는 연구가 있을 경우, 연구자가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의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

위원을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책임자가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

(2) 심사자의 기본 책무

-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심사를 수락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즉시 논문을 반송하고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심사자는 심사 규정과 기한을 준수하여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학문 외적 요인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원고의 내용이나 심사 과정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를 반드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 심사 결과에 대해 피심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한국어언문학]

심사절차 및 심사규정

- 1)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술활동이 뛰어난 자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 논문, 심사의뢰서, 심사 의견서 및 심사기준표 양식을 보낸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와 심사 기준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평가란에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택일하고, 심사 의견을 상술하여 심사기준표에 평점을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4)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때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 5) 심사가 끝나면 게재가능은 3점, 수정 후 게재는 2점, 수정 후 재심사는 1점, 게재불가는 0점을 부여하고, 심사위원 3인의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① 평균점수가 3점이면 게재
 - ② 2점 이상 3점 미만이면 수정 후 게재
 - ③ 1점 이상 2점 미만이면 수정 후 다른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사 위촉, 단 ‘재심사 위촉’ 여부는 편집위원회 결정에 의함
 - ④ 평균점수가 1점 미만이면 게재 불가
- 6) 논문의 게재 여부와 게재 논문의 수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투고된 논문을 심사 시, 심사자의 개인적인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사적인 친분 등에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과정에서 학술지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대외비로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도 대외비로 하고,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를 통해 저자에게 전달한다.

[중국현대문학]

제6조 (논문심사)

논문 각 편당 3인 혹은 5인의 논문심사위원을 둔다.

심사 대상 논문은 중국 현대문학과 문화, 현대한중비교문학, 그리고 관련분야 등에 관한 연구논문 및 번역논문으로서 타 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만약 타 학회지나 학위논문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된 사실이 차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소급해서 게재를 무효로 하고 당사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타 전공 논문이라 하더라도 중국현대문학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논문심사 요지 및 평가 내용은 본 학회에서 규정한 투고 논문 심사평가서에 기록한다.

심사 내용은 전체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게재의 적합성 판정이다. 각 심사위원들은 해당 논문이 당호에 게재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여, '적합'과 '부적합' 가운데 하나를 표시한다. 심사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적합'을 판정하여야 해당논문은 당호에 게재될 자격을 얻게 된다. 두 번째 부분은 항목별 평가이다. 심사항

목은 ‘문제의식은 독창적인가?’, ‘연구방법은 참신한가?’, ‘형식은 적합한가?’, ‘내용은 충분한가’, ‘분량은 적절한가?’, ‘논지는 일관적/합리적인가?’, ‘근거 제시는 충실한가?’, ‘학문적/실용적 가치는 있는가? 등 여덟 개로 나뉜다. 심사위원은 각 항목마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 혹은 ‘미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한다. 심사위원 세 명이 평가한 항목 합계 24개 가운데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이 10개 이상이면 당호 게재가 보류된다. 세 번째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직접 심사위원 및 수정 요망사항을 기입하는 것이다.

논문심사위원들로부터 각 해당 논문을 심사한 결과를 모두 보고 받은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관한 최종 판정을 한 후,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송부할 논문심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위원의 성명과 직함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송한다. 게재 부적합이나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수정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필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수정하고 그 수정한 내역을 편집위원회에 밝혀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필자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필자의 신상을 상호 노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편집시한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직접적인 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필자가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고의 게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및 절차

5.1.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 적용 규정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을 때, 검증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외부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 기관의 규정에 따라 검증할 수도 있다.

연구윤리규정	해당 연구기관 규정	교육부 훈령
법적 근거	- 연구기관 자체	- 학술진흥법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적용 대상	-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 - 학위논문, 교내연구비, 기업으로부터의 수탁연구 등 포함	- 학술진흥법 상의 학술지원 사업 - 교육부 소관 연구 개발사업

〈표6〉 연구윤리 적용 규정

연구윤리 관련 상위 법령 내용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의 확보)

-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증 주체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 연구기관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외부 지원을 받았을 경우는 지원 기관에서 검증을 할 수도 있다.
- 문제가 되는 연구를 수행한 후 소속 기관을 옮겼을 경우,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연구 수행 중에 소속 기관을 옮겼을 경우는 최종 연구 결과 발표 시점의 소속 기관이 검증한다.
- 두 개 이상의 연구 기관이 참여한 연구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 자체 조사가 어렵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혹은 두 개 이상의 연구 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상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②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 검증 시효

-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검증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징계 처리를 위해서는 일정 시한을 정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검증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 ②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진실성 검증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또는 연구 결과의 보고나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아주대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검증 시효에 대해 연구자들의 견해는 <설문8-1>과 같았다.

연구윤리 검증시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시효가 필요하다	52.7%	733
시효가 필요하지 않다	47.3%	657
answered question		1390
skipped question		1

* Response Percent는 이 질문의 응답자 가운데 세로의 항목을 선택한 비율을 가리킨다. 즉 응답한 288명 가운데 12.8%인 37명이 연구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의 소속 학교 연구 윤리위에 위임한다’를 선택하였다.

** Response Count는 이 질문의 응답자 가운데 세로의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의 숫자를 가리킨다.

<설문8-1> 연구윤리 검증시효에 관한 인식

연구윤리의 검증시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2.7%를 차지하였지만, 전공별로 많은 견해차이가 보였다. <설문8-2>의 전공별 통계를 보면, 시효가 필요하다는 응답율이 65%선으로 높은 편인 ‘법학’분야와 ‘기타’분야, 그리고 40~45%선으로 낮은 편인 ‘역사’분야와 ‘철학/종교’분야가 큰 차이가 보인다.

전공별 차이 (시효가 필요하다) (전체 : 52.7%)							
문학	역사	철학/종교	어학	사회과학	법학	예술	기타

50.75%	41.43%	44.35%	50.00%	53.36%	64.38%	52.88%	65.00%
--------	--------	--------	--------	--------	--------	--------	--------

〈설문8-2〉 전공별 연구윤리 검증시효에 관한 인식

(4) 입증 책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소속 연구 기관과 조사 위원회에 있다. 피조사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 피조사자는 연구 기관과 조사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 의혹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검증 기구

-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소속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증 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본조사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형태의 검증 기구가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사위원회는 기관과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제척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진행 과정과 발언,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국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와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각 캠퍼스 부총장으로 하되, 위원장 부재 시 산학협력단장(단, GLOCAL(글로컬)캠퍼스는 산학연구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9.29., 2009.12.29., 2011.5.16.)
-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지원 팀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범위의 성격이 외부연구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산학관리팀장(단, GLOCAL(글로컬)캠퍼스는 산학협력실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9.29., 2009.12.29., 2011.5.16.)

제7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강원대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③ 교무처장 이외의 위원은 교무처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한국정치학회 저술 윤리강령]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학회 회원을 포함한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연구윤리규정]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 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2주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편집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 경감할 수 있다.

[민족문화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위원장은 본 학회의 대표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대표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변론 기회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며,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명예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법률 규정에 위반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2.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검증의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사후조치’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판정과 결과 통보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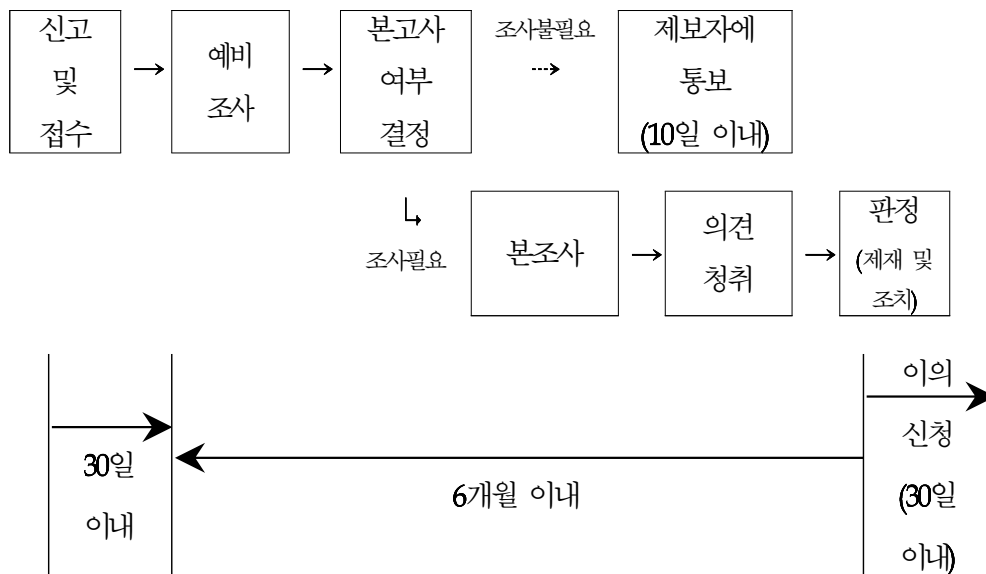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1조(판정)

-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림1〉 전체 검증 절차⁵⁾

(1) 예비조사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내용에 대한 본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 조사요건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띠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 부정행위 의혹이 충분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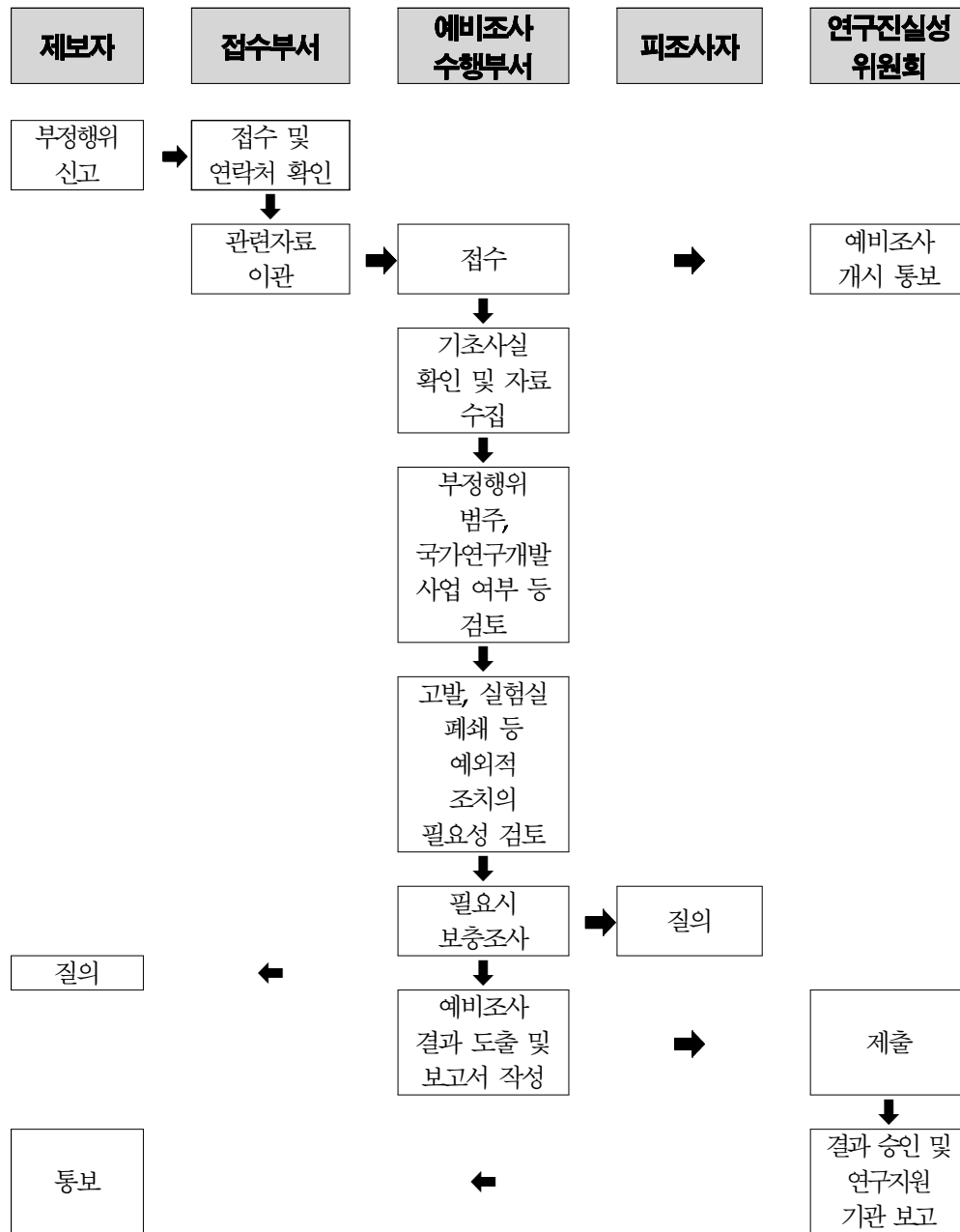
5) 과학기술부(2007: 70) 참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6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예비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제보자 또는 외부 지원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제보에서 예비조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2〉 예비조사 절차도⁶⁾

6) 황은성 외(2011: 161) 참고.

제보 접수 부서	① 제보 접수자가 제보 내용, 제보자 등 관련 자료를 예비조사 담당자에게 이관 - 제보 접수 시점에서 접수자는 제보자에게 추후의 연락 방법에 대해 미리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제보자가 추후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미리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
예비조사 수행 부서	② 기초 사실 여부 확인 - 표절의 경우 제보된 텍스트, 논문, 보고서 등 기본 자료 입수 및 비교 ③ 부정행위 범주의 확인 - 시효 5년 경과 여부 (기관 내부 규정에 시효가 있을 경우에 해당) - 피조사자의 소속과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대상인지 검토 ④ 고발이나 연구 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의 확인 - 표절 등 단순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⑤ 필요 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Inquiry) 실시 - 질의(Inquiry)는 Yes/No 등 본격적인 조사 시행 이전에 기초 자료의 수집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의 검증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다. ⑥ 필요 시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설명 요청 ⑦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조사의 실시를, 그렇지 않고 제보가 부정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정도가 미미하거나 단순 실수임이 명확할 경우 본 조사 불필요 등 실시 여부의 결정 ⑧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부서)에 보고서를 통보 -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으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보의 내용과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함.
연구 진실성 위원회 (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 부서)	⑨ 예비조사 결과의 승인 및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기관)에 결과 통보 - 승인은 실무적인 절차를 의미하며 예비조사의 결과가 진실성위원회에서 반복될 수는 없음 ⑩ 본 조사 필요시 조사위원회의 구성

〈표7〉 예비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⁷⁾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예비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조사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7) 황은성 외(2011: 162) 참고.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15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거나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보의 접수일 또는 필요성을 인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3조 제1항의 검증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보 내용 등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경우 그 구체적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사실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비조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가 예비조사의 결과를 승인 또는 불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의 최종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효가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본회 사무국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본회 집행위원회와 연구지원기관 및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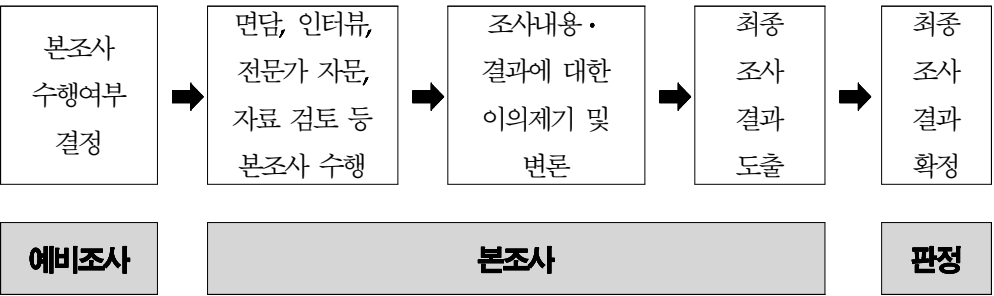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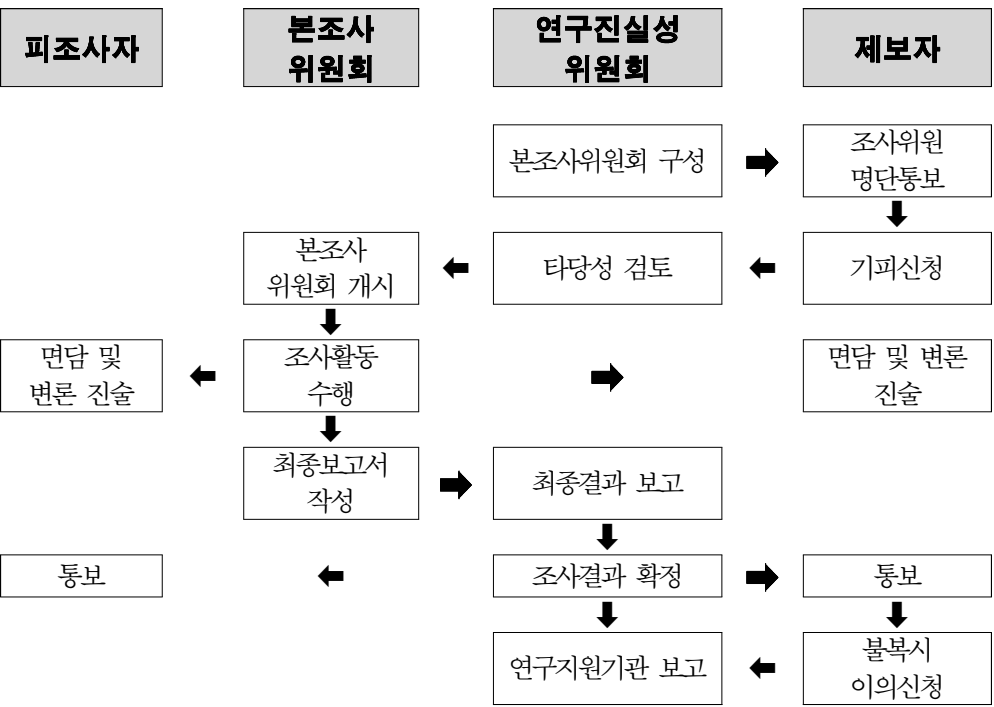
(2) 본조사

-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절차로서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정도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다.
- 본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3〉 본조사 과정보도



〈그림4〉 본조사 세부 절차도⁸⁾

연구 진실성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	① 본 조사 위원회 구성 - 외부인, 연구 분야 전문가 등 관련 규정 준수 ② 본 조사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접수 - 제보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연락이 곤란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접수된 이의의 타당성과 반영 여부 검토 -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위원을 교체하고 다시 통보하며 만일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최종보고서에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의 개시를 통보
본조사 위원회	⑤ 본 조사 활동 수행 - 기초 자료의 수집, 검토, 면담, 질의, 증인, 참고인 조사 등 일체의 조사 과정 수행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는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⑥ 결론의 도출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에는 1) 제보 내용, 2)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부정행위 목록, 3)조사 진행 경과, 4) 예비조사의 결과, 5) 관련 증거나 증인 진술,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변론 또는 의견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7)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과 각 당사자의 해당 행위에서의 역할, 8) 부정행위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의도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이에 기반을 두어 후속조치의 적절한 수위에 대한 건의, 9)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한계, 또는 건의 사항, 10) 조사위원의 명단 등이 최소한 담겨있어야 함

8) 황은성 외(2011: 164) 참고.

	- 조사위원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미리 규정된 의결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 ⑦ 최종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
연구 진실성 위원회	⑧ 최종보고서의 승인 및 제보자, 피조사자, 연구지원기관 등 관련자에게 결과 통보

〈표8〉 본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⁹⁾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본조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60% 이상,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되어야 한다.
- ④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서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출석 및 서면요구에 불응 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9) 황은성 외(2011: 165) 참고.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피·제척·회피)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사건의 조사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윤리위원회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진술기회의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본조사결과의 보고)

-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16조(본조사)

- ① 위원회가 본조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사안을 판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피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이러한 사실 및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 ②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본회가 관리하고 있는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연구윤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연구윤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윤리위원 명단

(3) 판정

- 판정은 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최종 결론이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판정을 내릴 때 참고할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
 - (b) 분명하고 확신할 만한 입증
 - (c) 증거의 상대적 우위

(a)는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유죄 판정을 위해서 조금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에서의 판단기준이고, (c)는 양측의 주장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는 측의 증거를 인정한다는 민사소송에서의 기준이다. (b)는 그 중간 단계이다.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판정)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확정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판정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판정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총장에게 통보한다.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21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 내용, 피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및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안을 판정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로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위원들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로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의견의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22조(판정)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회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2/3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사후조치

- 본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정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기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 후속 조치는 정직, 파면, 해임 등 인사상의 징계뿐만 아니라, 논문의 수정, 철회, 연구 제약, 연구비 회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판정 이후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22조(이의신청 등)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0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판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

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절 검증 결과의 처리

제23조(검증 결과의 승인 등)

-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증 결과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제보자, 피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재조사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확정 결과의 통보) 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승인하여 확정 한 때에는 위원장은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 피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확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등)

- ① 제보자, 피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신청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26조(기록보존 및 정보공개)

- ① 위원회는 연구진실성의 검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최소한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진실성을 검증한 결과보고서를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개로 말미암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인 등의 명단

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결과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본회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본회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

1. 소속 기관의 경우

	주와경고	견책·감봉	정직	해임·파면	학위 취소	기타
위조	○	○	○	○	○	
변조	○	○	○	○	○	
표절	○	○	○	○	○	
부당한 저자표시	○	○	○	○	해당사항 없음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	○	○	○	○	
논문대필	○	○	○	○	○	

2. 학술지의 경우

	논문 삭제	투고 금지			사과문 게재	회원자격 박탈	소속기관 통보
		1년	3년	5년			
위조	○	○	○	○	○	○	○
변조	○	○	○	○	○	○	○
표절	○	○	○	○	○	○	○
부당한 저자표시		○	○	○	○	○	○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	○	○	○	○	○
논문대필	○	○	○	○	○	○	○

- 징계의 정도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다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표절한 경우 정직이나 학위 취소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글의 한 두 문장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거나 일부 내용을 인용한 후 그에 대한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처분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 기관 및 학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위의 징계를 병합 부과할 수 있다. 가령 심각한 수준의 위조나 변조가 확인된 경우 학술지 발행처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몇 가지 징계를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술지 발행처에서는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는 학술지 발행처에서 이미 회원 박탈 등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직이나 해임 및 파면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2007), 연구윤리 · 진실성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과학기술부.
- 김명식 편(2013),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연암서가.
- 김옥주(2010), 책임 있는 연구수행: 논문발표와 연구윤리, 서울대학교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의 BK 연구윤리 강좌.
- 니콜라스 H. 스네텡 외(2012), 연구 윤리 소개, 한스앤리.
- 서이종 편저(2013),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박영사.
- 이인재(2007),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윤리연구 66.
- 이인재(2008), 자기 표절의 쟁점, 윤리연구 73.
- 이인재(2009), 2008년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 · 분석, 교육부.
- 이인재(2010),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 21.
- 이인재(2013), 연구윤리활동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웹진.
- 채석용(2011), 논증하는 글쓰기의 기술, 소울메이트.
- 티모시 F. 머피 지음, 강준호 옮김(2008), 생명의학 연구윤리와 사례연구,
서광사.
- 함창곡 외(2013),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 황은성 외(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한국연구재단.
- Buchanan, E. (ed.) (2004), Readings in Virtual Research Ethics: Issues
and Controversies, Hershey: Idea Group.
- Comstock, Gary (2012), Research Ethics: A Philosophical Guide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ott, Deni & Judy E. Stern (ed.) (1997), Research Ethics: A Reader,
UPNE.

Gregory, Ian (2003), *Ethics in Research (Continuum Research Methods)*, Bloomsbury.

Israel, Mark & Iain Hay (2006), *Research Ethics for Social Scientists*, SAGE.

Shamoo, Adil E. & David B. Resnik (2009),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Siebert, Sage & Joan E (2012), *Planning Ethically Responsible Research: A Guide for Students and Internal Review Boards*, second edition, SAGE Publications.